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12.21]

- 12 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 일 이내(2 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월)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
 -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함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구분	'19년	'20년	'21.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2,431	31,744	33,700
지정회사수 (선임기한·절차위반)	92	52	144

선임제도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2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선임제도)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① 주권상장회사 (sp4)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sp5)			회계법인	
③ 비상장주식회사 (sp6)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④ 유한회사 (sp7)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

① (선임기한 위반) '19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법인)는 '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되었고, '20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20.4.29. 체결함

◦ '20년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이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21.4.30. 체결함

➔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21.2.14.) 위반

- ② (선정절차 위반) '19 년 말 자산총액이 900 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B 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B 사는 '20 년 말 자산총액이 1,100 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B 사의 회계담당자는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정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 종전과 동일하게 동 사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1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 감사인 선정절차* 위반
-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함

3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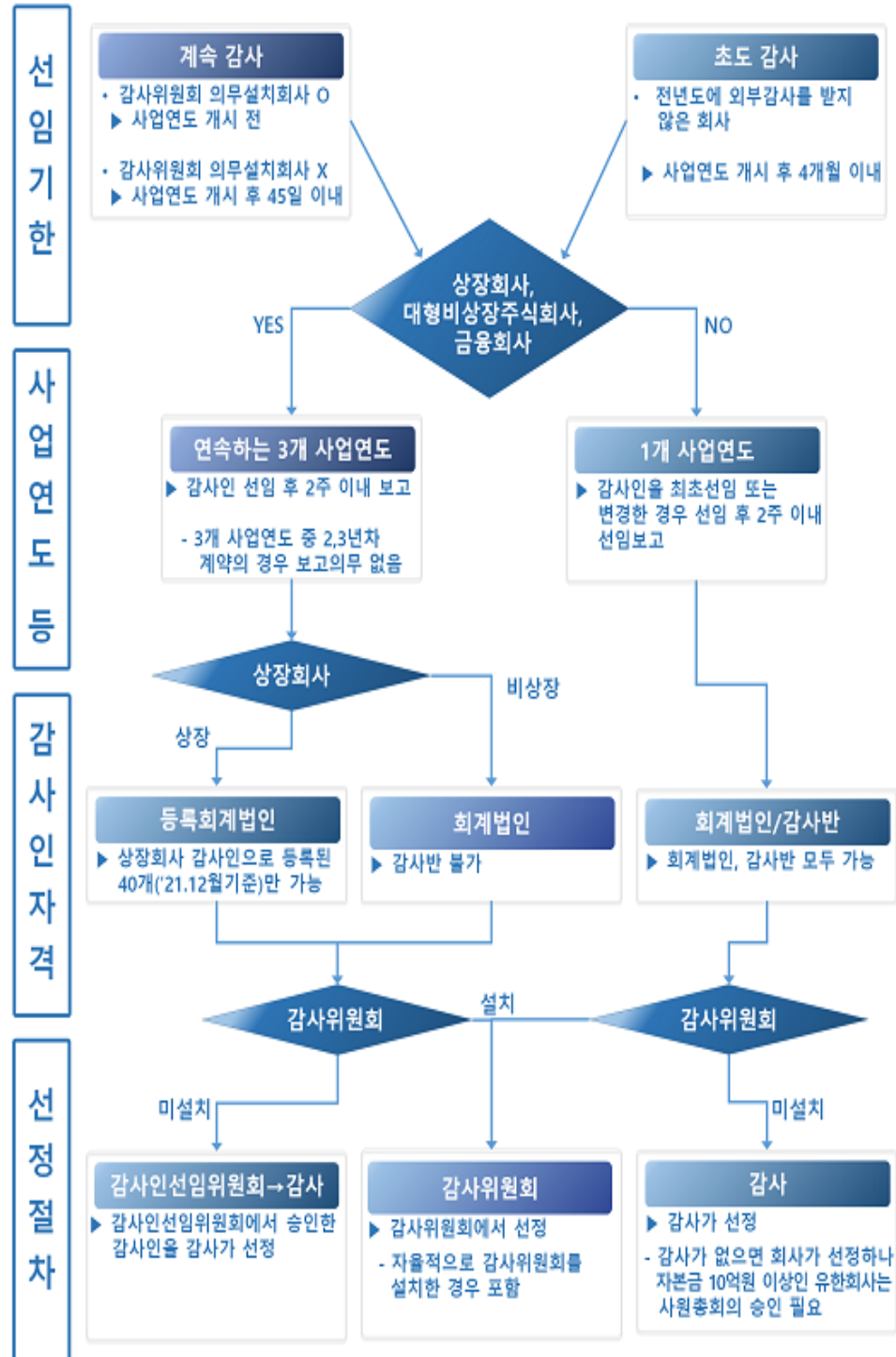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22.1월)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 (붙임) 1.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2.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붙임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붙임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 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원 전원 동의시(5~6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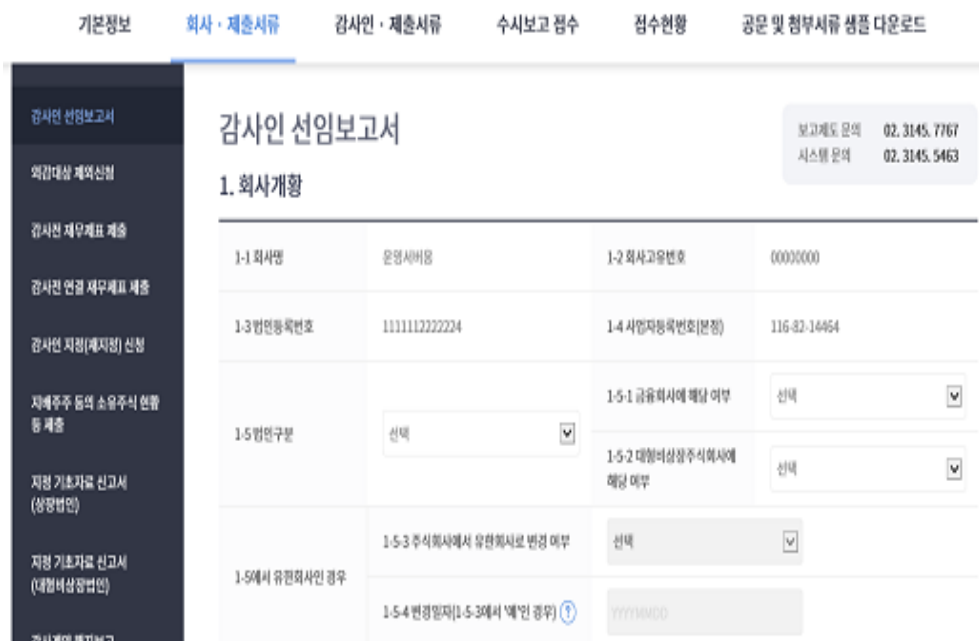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감사인 선임보고서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7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운영서버용	1-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4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16-82-14464
1-5 법인구분	선택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에서 유한회사인 경우	1-5-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	선택	
	1-5-4 변경일자(1-5-3에서 '예'인 경우) ?	YYYYMMDD	
1-6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	선택	1-6-1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여부 ?	선택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2. 제출할 문서 첨부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파일 선택
2-2 감사계약서 사본		파일 선택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록부등본 ?		파일 선택
2-4 감사인 교체 사유		파일 선택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파일 선택
2-6 감사위원회 역사록		파일 선택
2-7 감사인 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의사록		파일 선택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회사 · 제출서류 감사인 · 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신) 제출현황

보고구분	선택	▼	접수일자	2020.12.14	📅	-	2021.12.14	📅	조회
처리상태	선택	▼							초기화

총 4건

접수번호	보고구분	첨부파일	접수일시	처리상태	비고	처리일자	확인줄
20211009000001	지정기초자료 신고서(회계법인)		2021.10.09 12:45:54	접수완료			
20210819000003	감사인 선임보고서		2021.08.19 11:46:59	접수완료			조회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0.),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기령 §27 의 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input checked="" type="radio"/> 1일 0.025%(연 9.125%)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input checked="" type="radio"/> 1일 0.022%(연 8.030%)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0.019~0.022% 범위 내 결정할 예정으로 발표('21.7.26)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2.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input checked="" type="radio"/>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input checked="" type="radio"/> (한도) 월 20 만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input checked="" type="radio"/>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차량 <input checked="" type="radio"/> (좌 동)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소득령(제 31442 호) 부칙 §19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input type="checkbox"/> '21.12.31.까지	<input type="checkbox"/> 과세유예 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23.12.31.까지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4. 1 세대 1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 (소득령 §160①)

< 법 개정내용(§89①)>

- 1 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가주택 양도차익 <input type="checkbox"/>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 양도차익 x $\frac{(\text{양도가액}-9\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input type="checkbox"/> 9억원 초과분 → 12억원 초과분* * 양도차익 x $\frac{(\text{양도가액}-12\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frac{(\text{양도가액}-9\text{억원})}{\text{양도가액}}$	<input type="checkbox"/> 9억원 초과분 → 12억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frac{(\text{양도가액}-12\text{억원})}{\text{양도가액}}$

<개정이유> 1 세대 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식 보완

<적용시기> 법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156의 3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요건 보완 ① (좌 동) ② (좌 동) ㉠~㉡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6.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법인령 §44②(3) 및 (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input type="checkbox"/>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input type="checkbox"/>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개정이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

7.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법인령 §86 의 2)

— < 법 개정내용(§50 의 2) > —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

<개정이유>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8.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안
<p>□ 금전대여 시 시가</p> <p>○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p> <p>○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p> <p>-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 ①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 '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p> <p>-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p> <p>-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p>	<p>□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p> <p>○ (좌 등)</p> <p>○ (좌 등)</p> <p>- (좌 등)</p> <p>- (좌 등)</p> <p>-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시 3년간 의무적용</p>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년)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법인령 §133 의 2 신설)

< 법 개정내용(§94 조의 2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현황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 <input type="checkbox"/> 현황자료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기준일) 매년 12.31일 ○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운영자금 현황 -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 인정요건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 「상증령 별표」에 업종 열거	<input type="checkbox"/>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개정이유>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11.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상증령 §34 의 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증여세 한도* * (法)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 증여세 계산방식 - [증여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input type="checkbox"/>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 계산방식 변경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개정이유> 특정법인 거래 관련 증여세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중부령 §4 의 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p><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p>(좌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은 3년 ** 지분, 가액未고려 <p>※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p>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영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13.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 (부가령 §21 의 2 신설)

< 법 개정내용(§ 10⑧)>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14.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 (부가령 §5 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원칙) 수탁자 <input type="checkbox"/> (예외) 위탁자	<input type="checkbox"/> 예외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좌 등)
<추 가>	- 위탁자 지위이전시 납세의무자 : 기존 위탁자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 (부가령 §33 의 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 상품중개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등)</p>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령 §70④)

현 행	개 정 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부가령 §96 의 2 ⑦)

< 법 개정내용(§53 의 2⑥)>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명세 5 년간 보관의무 신설
- 거래명세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용역의 종류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 용역 제공일자 ○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부가령 §9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input type="checkbox"/> 의무제출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 의2 준용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21.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조특령 별표 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p>○ 12대 분야* 235개 기술</p> <p>*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압축기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p>○ 13대 분야* 260개 기술</p> <p>*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p> <p>-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 (신규 19, 확대 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CCUS (7)</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 (8)</td> <td style="text-align: center;">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재생E (12)</td> <td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메스 에너지 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공정 (11)</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환원제철 기술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E효율수송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td> </tr> </table> <p>-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p> <p>*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현행 기술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div>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input type="checkbox"/>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 선정일부터 최대 3년</p>	CCUS (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 (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 (12)	바이오메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 (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 (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CCUS (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 (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 (12)	바이오메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 (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 (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조특령 §7 의 3)

< 법 개정내용(§8 의 4 신설)>

□ 중소기업의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p> <p>○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❶ - [❷ × ❸]</p> <p>❶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p> <p>❷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p> <p>*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p> <p>❸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p> <p>○ (신청기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p> <p>○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p> <p>○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p>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634, 2021.12.30)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60.5%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B법인이 32.3%, C법인이 7.2%를 보유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먼저 무상감자한 후, A법인과 C법인만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본건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는 동시에 결의되고 동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였음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무상감자 전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하 '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법령해석법인 2021-7339, 2021.12.30)

(사실관계)

○ A법인은 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1년 근로자복지 증진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무상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음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질의요지)

○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